

실기시험 수험자 위그 준비 및 유의사항

가. 위그 및 견체모형

1. 위그 및 견체모형

- ① 위그 및 견체 모형은 수험자가 지참하고 시험실 입실
- ② 위그의 색깔은 하얀색이어야 함
- ③ 위그에 패턴이 없어야 함 (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)
- ④ 견체모형은 딱딱한 재질로 다리 부위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함
- ⑤ 입실 전 위그의 브러싱 완성
- ⑥ 입실 전 한쪽 귀 안쪽에 수험자 이름 표기

2. 털길이 (최소)

| 등급 | 털길이 | 클립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|--|
| 사범 | 13cm 이상 | 쇼클립 | 물리력을 가하지 않은 준비된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셋업하는 경우 셋업부위 털의 최소 길이임, 셋업 이외의 길이는 모두 7cm 이상이어야 함. |
| 1급 | 13cm 이상 | 쇼클립 | |
| 2급 | 7cm 이상 | 팻클립 | |
| 3급 | 7cm 이상 | 팻클립 | |

3. 눈, 코, 꼬리

- ① 위그에 눈,코, 꼬리와 꼬리털 부착
- ② 눈과 코는 정해진 위치에 장착. 글루건 또는 본드로 붙이는 것도 허용
- ③ 꼬리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꼬리를 빼고 꼬리의 위치에 가로,세로 1cm이하 크기로 가위로 털을 오려내어 위치를 표시하는 것만 허용. 꼬리털은 마무리 단계에서 부착하여 사용.
- ④ 눈,코,꼬리 중 한 가지라도 없을 경우 해당 부위 채점에만 반영됨

4. 귀털/밴딩

- ① 귀의 털은 사전에 양쪽으로 밴딩하거나 깎아서 시험실에 입실
- ② 귀의 털을 머리위로 묶는 것은 작업에 방해가 되므로 금지
- ③ 1급과 사범 셋업 부위는 하나로 묶어야 함.

5. 발/다리

- ① 다리 부위의 털이 움직이지 않도록 네 개의 발에 모두 고무 밴드를 고정하여 입실
- ② 다리의 수평 유지를 위하여 발바닥 부위에 패드 부착 허용. 단, 패드 부착물은 패드의 크기보다 작아야 함.

나. 유의사항

- ① 시험 시작 전과 종료 후 일정 방향에서 작품 사진 촬영
- ② 수험자는 신분증과 수험번호표 지참
- ③ 학원 등 소속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시가 있거나 디자인의 미용가운 착용 불가
- ④ 작업 종료 후 테이블 위 및 주변의 털을 정리하고 채점에 협조
- ⑤ 채점이 종료되면 미용가운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 후 퇴실
- ⑥ 테이블 암 설치를 원할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 설치
- ⑦ 3급은 블런트 가위만 사용
- ⑧ 실건을 미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작업 (중요)
- ⑨ 왼손잡이는 본인이 직접 협회에 왼손잡이임을 메일송부 확인 (pskkc@naver.com)

다. 금지사항

- ① 시험도중의 테이블 암 설치
- ② 테이블 위에 매트 설치
- ③ 앉아서 작업
- ④ 의자위에 서서 작업
- ⑤ 채점에 방해가 되는 속임수
- ⑥ 감독위원의 지시 불이행 (추가함)

라. 감점사항

- ① 작업이외의 손의 위치
- ② 견체모형 발의 위치
- ③ 견체모형의 넘어짐
- ④ 견체모형 머리의 위치

마. 실격사항

- ① 미용 전·후 사진이 누락된 경우
- ② 작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
- ③ 위그의 몸체 부위가 찢어진 경우
- ④ 부정행위
- ⑤ 준비한 위그와 견체 모형이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
- 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시험시간 중 위그에서 손 떨어짐이 5회 이상인 경우
 - 시험시간 중 3개 이상의 견체모형 발이 바닥에서 5회 이상 떨어진 경우
 - 시험시간 중 견체의 방향이 3회 이상 바뀔 경우
 - 시험시간 중 견체가 3회 이상 넘어지거나 2회 이상 바닥으로 추락한 경우
- ⑦ 시험과제와 다른 스타일을 작업하는 경우
- ⑧ 위그에 패턴을 표시한 경우
- ⑨ 3급 수험자가 블런트 가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. 끝.